

반론권의 이념적 배경과 사회적 책임론 1)

김 병 국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 설

자유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목적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외부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freedom fr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freedom for)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유는 언론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유'라는 말을 할 때 흔히 'freedom'과 'liberty'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Berlin의 지적처럼 'liberty'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freedom'은 행위자로서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²⁾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뛰어넘어 적극적 자유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고 할 때 결국 그 의미는 'freedom'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소극적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지 않지만 적극적 자유는 반드시 개인의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사회기구로서 정착하는 데는 소극적 자유가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충분조건으로 모두 작용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항상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보다는 넘치게 마련이다.³⁾ 다시 말해서 소극적 자유가 행동을 요구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행동하도록 하는 의무감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선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의무감을 수반함으로써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간의 이익교량을 판단하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무(ought)는 행위의 가능성(Can)을 내포하지만 반대로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의무를 반드시 수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언론인은 적극적인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언론자유는 진정한 언론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언론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언론자유가 오늘날의 사회책임론과 어떤 맥락에서 접합되는지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를 둘러싼 도덕철학의 흐름들이 어떤 변증법적 수렴을 가져오는지 알아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의 사회책임론과 그것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반론권의 지적 배경을 추론하고자 하는 데 있다.

II. 언론자유와 철학적 논의

철학적 및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자유' 개념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자유' 개념은 다면적인 해석과 관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정치사상가나 사회사상가들의 논의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4)

Kant는 '자유' 개념에 대해서 다소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내부적 구속이나 자기규율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덕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만이 그 일에 대해 강제적인 의무감을 갖게 되며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자기명령의 노예라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Kant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내부의 전제적인 권위(autocratic authority)와 자신을 일치시키며 스스로 그것의 완벽한 명령에 복종하는 한 그는 자유롭다는 '도덕적 의무의 전제성(dictatorship of the moral ought)'을 Kant는 내세우고 있다.5)

이러한 Kant의 자유 개념을 이어받아 Tucker는 인간이 내부적 전제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인간은 자유롭지만 단순한 충동이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했다.6) 그러나 Tucker는 자신의 제한적인 규칙이 최고의 자유라는 Kant의 주장과 모든 사랑이 행복을 갈구하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유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독재자의 입장이 매우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자신의 이성적 반성력과 자기규율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자칫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판단과 행위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Tucker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Mill은 자유개념에 있어서도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자유는 최대의 행복이 사회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자본주의를 최대의 행복을 일반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적의 제도로 간주했다. 그러하여 Mill은 개인은 가능한 한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에 대해 불가분의 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효용성에서 볼 때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겠다. 즉 Mill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자유로이 다른 사람들과 사상을 교환하는 인간은 존엄성을 높이고 또한 자기의 가장 완전한 능력을 발휘한다. 만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 인간을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몇몇의 보다 적은 진리, 단기적인 진리, 실제적인 진리의 발견에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Hutchins 위원회가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투쟁을 '폭력의 단계'에서 '토론의 단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7)

그런가 하면 Herbert Spencer는 이와는 달리 사회적 다윈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옹호했다. 즉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자는 쇠퇴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게 되며, 이것이 곧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를 통제하거나 부질없는 동정심으로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Spencer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철저한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주장에 의하면 자유는 천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책임은 결국 인간에 의해 가공되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천부적인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유를 규율하며 공적 책임 혹은 사회윤리라는 명분하에 축소된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론에서의 개인적 자유도 언론메시지의 사회적 결과를 고려할 때 또한 언론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언론의 자유와 통제, 선의의 자유와 사회적 양심을 가진 자유 등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언론의 윤리적 측면에서 항상 논쟁의 초점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해서 관심있는 언론인은 마찬가지로 윤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동시에 스스로 행동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를 책임있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겠다.

한편 도덕적 의무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윤리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연스럽게 의무감을 갖추어야 한다. Kant는 도덕적 의무(moral duty)는 도덕적 임무(moral obligation)와 유사하다고 보고, 그 이유는 도덕적 의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도덕적 의무는 외부의 힘이나 처벌에 대한 위협에 의하지 않고도 개인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Haag는 의무감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강제가 없이도 구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⁸⁾ 따라서 윤리는 자유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언론윤리는 자유로운 의지, 즉 언론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철학자인 Taylor는 "자유로운 의지 즉 다른 것에 종속되지 않은 의지만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노예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자유로운 사람만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⁹⁾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에서의 윤리는 언론인이 여러 가지 대안적인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은 상당한 언론자유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에 언론인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이 언론인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은 강요된 혹은 외부적인 도덕성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는 도덕성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만 한편 자유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수반될 때만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언론 내부의 힘과 언론 밖의 다양한 힘들이 언론자유와 과도한 남용을 억제하고 모든 언론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자유와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작용하게 된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적인 견제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책임을 수반하는 언론자유를 실천하는 언론행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흔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특종기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인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한 예로

1984년에 실시한 <뉴스위크>지에 대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그들이 매일 접하는 뉴스 중에서 극소수만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6%만이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을 뿐이다.10) 또한 미국의 중견언론인이었던 Tom Goldstein은 그의 논저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의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원인은 다름 아닌 언론자신으로 규정하면서 오늘날 언론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할 정도로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11)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더 큰 도덕공동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산업사회 초기 시대에는 개인주의적 윤리를 오히려 쉽게 수용하였지만 사회가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사회적 윤리에 기반을 둔 좀 더 민감한 도덕성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즉 언론인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도덕의식으로 자아와 사회를 합치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은 언론에서 사람으로, 개인의 권리에서 공중과 사회의 권리로,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언론인들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윤리와 책임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Aristoteles라 할 수 있다. Aristoteles는 도덕적 관심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그는 단지 엘리트만이(당시에는 그리스의 남자 시민계급) 도덕적 사유와 행동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노예나 비시민계급은 편안하게 지내고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가리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12)

Aristoteles의 엘리트주의적인 도덕철학과는 달리 Kant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다. Kant에게 있어서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도덕적 가치를 '선한 의도'(good intention)에서 찾았다. 선한 동기를 갖고 시작한 행동이 설령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Kant의 입장이다. 따라서 Kant는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은 의무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Aristoteles의 입장에서는 여자와 노예들만이 도덕적 의무감을 따르게 되는 데 그 이유는 참된 선과 행복을 구가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도덕적 의무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Kant가 말하는 도덕은 처벌과 규범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Aristoteles가 주장하는 도덕은 주로 개인의 욕망과 야망으로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다.13)

그 후 David Hume과 Rousseau는 모두 도덕은 감정과 분위기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Hume에 따르면, 이성(Reason)은 열정(passions)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고 보았으며, 성선설을 믿었던 Rousseau도 Hume과 같은 생각을 했다. 이들의 관점과는 달리 Kant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엄격하게 사회적인 것이며 모든 이익과 욕망 혹은 성향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Hobbes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옳음'을 판단했는데, 즉 사람들은 이익, 안전, 명성 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자인 Jeremy Bentham은 Hobbes의

이기주의적 도덕관을 받아들여 이를 사회철학으로 한 단계 승화시켰다. Bentham의 쾌락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반면에 고통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공리주의를 따랐던 사람 중에 특히 Mill은 이기주의와 개인으로부터 탈피하여 도덕을 점차로 집합적인 사회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Aristoteles의 도덕철학으로의 귀의를 주장했던 Friedrich Nietzsche는 칸트적 도덕철학과 기독교적 도덕관을 배격했다. 또한 그는 공리주의적인 도덕철학에 대해서도 인간행동의 존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세속철학이라고 혹평했다. 그래서 그는 Kant의 도덕적 의무 개념은 노예에게나 적합한 것이지 존경받는 개인의 뛰어난 것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미덕을 개발해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Aristoteles와 마찬가지로 Nietzsche도 개인 뛰어난 사회의 총체적인 뛰어난 일부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부과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도덕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Nietzsche의 입장이다. 이러한 Nietzsche와 Aristoteles의 엘리트주의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현대 계몽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John Rawls이다. 그의 주저인 <정의론>에서 Rawls는 사회의 궁극적인 근간을 합의체계(a set of agreements)로 인식했다. 사회의 엘리트들은 단지 더 좋은 사회적 환경이나 남보다 나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행운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방임하에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부정의(social injustice)를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정의를 치유하기 위해서 Rawls는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생활방식 등에 연연하지 않는 '무지의 가면'(veil of ignorance)을 쓰고 활동하는 '이상적 관찰자'(ideal observer) 개념을 도입했다.¹⁵⁾ 즉 객관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적정의 즉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자는 것이 Rawls의 도덕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동등한 기회의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철학적 논의를 언론상황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 언론인은 Locke나 Rousseau 사상을 취해야 하며, 혹은 Rawls나 Kant의 관점에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언론인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즉 개인적 윤리와 집합적 윤리를 조합해야 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언론인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외부의 제약요소들을 최소화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기발전과 윤리적 자율성을 찬양하면서도 이러한 개인의 잠재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인정하는 것, 도덕적 원리로 이어지는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순진한 계몽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간과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것, 규범적 윤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Aristoteles적인 인격형성의 이상을 이해하는 것 등이 바로 오늘의 언론인이 당면하고 있는 행위실천에 있어서 변증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Locke와 Rousseau의 입장을 대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¹⁶⁾ 먼저 Locke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박탈당하거나 자유를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그는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독하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실존적 존재라는 전제하에 법

아래 만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축소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막강한 지배자의 압제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단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적 자유를 철저히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때 언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상적인 자연상태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에 다수의 지배를 통해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권리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Locke의 주장과는 달리, Rousseau는 인간은 자유로이 태어났으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슬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게 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Locke는 철저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요소로서 개인과 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감정과 열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비해 Rousseau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와', '만민의 의지(Volonté Tous)'를 구분하면서 후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정당한 요구와 필요를 무시하게 되어 모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혹은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만이 단순한 개인적 의지의 합계로서가 아닌 더 큰 사회의 합목적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Rousseau의 생각이다. 따라서 Rousseau는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된 언론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ocke가 철저히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언론의 사회적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면 Rousseau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억제시키고 계몽시키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ocke와 Rousseau 모두 그것이 계약사회든 공동체 사회든 간에 하나의 사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인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대리인인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나타내는 징표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자본주의 언론의 역기능과 공적 책임론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헌법의 기본 정신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으며 언론 역시 국가의 권력적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표현 행위는 처음부터 그 본질상 다른 기본적 개인권과는 달리 대량성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없고 항시 공개성,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찍이 언론에 대해 사적자유 이외에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의 관념이 덧붙여졌다.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위치에 대하여보는 시각에 따라 미국과 서구 특히 독일은 개념상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주로 언론자유에 사회적 책임을 추가하는 반면에 서구에서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언론을 공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Öffentlich)'이라는 개념은 그 어원이 시사하듯 '국가와 연계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공중의 이해를 대변한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공적 영역에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한 보편적 감독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이 단어가 서구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언론 스스로가 의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오랫동안 국가와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는 언론의 이러한 공적 책임의 관념은 영국에서 진보적인 시민계급이 정열의 철폐를 위해 정부와 싸우면서 처음으로 자유 언론의 활동을 통한 '공적인 광장(Öffentlichen Forum)'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생겼다. 그 당시의 지배권력은 이 개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처럼 Öffent-lichkeit의 변천에 대해 쓴 연구서로는 Habermas의 라는 책이 있음) 지배계층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이 되었고 언론은 시민 다수를 위한 공적 광장이 되었다. 즉 공적인 일을 독점하려는 정부에 대항해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인 바 특히 계몽주의의 아버지인 John Locke는 언론에 의해 대변되는 '여론(Öffentliche Mein-ung)'을 국가권력이나 신권에 다음가는 제 3의 권한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이들이 대변한 자유주의(Liberalismus)는 언론의 역할을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 후 19세기 초 독일에서도 Josef Görres가 정부에 대항해 국민의 의견을 선도하는 언론의 임무를 자유스러운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지만 19세기 중반에는 그 당시를 지배했던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언론법/권은 주로 경찰법이나 형법의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하지만 언론의 공적인 임무를 강조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Löffl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 리버럴한 전통은 단절되고 나치스는 '공적인 과제'라는 관념을 왜곡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였다.1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에서의 공공성은 언론 자유사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나 소수 특권층에서 독점하려는 권력을 다수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 되었다. McQuail은 Habermas의 미디어 구조에 대한 기본철학에는 미디어가 계획적이건 혹은 우연에 의한 것이건, '공적 권익' 또는 '보편적 서비스 혹은 복자'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근본적 가정을 근저에 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abermas는 매스 미디어 사업을 자본주의 내에서의 상업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매스 미디어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미디어의구조 및 언론인의 활동은 사회 내의 문화적·정치적 삶에서의 사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이해를 위해 복무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미디어의 민주적 역할을 도출해낸다.19)

그러나 언론의 공적인 과제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적인 이해관계가 언제나 공중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Löffler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중(보통 사람들)들은 요란한 센세이셔널한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공적 관계에서 언론의 공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20)

'공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입장 표명', '공적인 삶에 대한 비판', '여론의 형성에 기여', '국민과 국가기관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 '기본권 수호', '교육에 기여', '독자들의 교화와 오락에 기여', '고독한 군중과 커뮤니케이션', '도움제공',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평화보장에 기여', '기타의 개별적 과제'.

이러한 언론에서의 공적 관념과 나아가 공적 책임론은 물론 특히 독일 등 서구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 등 여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언론의 공공성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상업적 언론체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공성 논의가 증폭되는 것은 매스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른 것으로 김택환에 의하면 특히 언론은 '대중문화'라는 신화를 만들어 내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중심기제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언론은 정치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더욱 띠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은 개인의 존재론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운명창조의 핵심인자로, 그리고 정치문화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근대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작동지주인자본의 매개체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21)

이와 같이 언론이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대중문화와 연결됨으로써 공적 책임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의 본질적 기능 수행상에서 의 공적 책임론이 제기되는 바 일반적으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각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보도'를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공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언론의 소중한 사회적 책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고 전제를 한 언론자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보도'와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언론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먼저,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언론의 속성상 정확성이 신속성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언론기관의 성실한 취재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는 첫째, 기사의 작성에 있어서 주관적 해석을 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는 특히 편집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오늘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법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상 판매 부수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막강한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한 상업성, 선정성에 호소하거나,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언론의 실재를 보면 이러한 상업주의적 경쟁 속에서 인쇄매체든 방송매체든 각 언론사는 각자 자기가 어떤 뉴스를 최초로 보도하는 영예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 결과 기사 마감시간에 쫓기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확성이 신속성에 희생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게다가 격렬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상업성이 우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특히 방송매체의 경우에는 방송되는 전체 시간 중에서 뉴스 등 사실보도에 할애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공적 광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반면 또한 보도할 뉴스가 폭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균형성마저 포기하고 일방만의 입장을 보도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그 반면으로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언론에 의한 피해는 증대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하여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언론에게 공적 책임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론권과 같은 어떠한 요구를 법적권리로서 언론수용자 또는 피해자에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즉 오늘날 언론의 역할을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으로 나눌 때 기능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의 활성화를 기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역기능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론의 책임'이라는 또 다른 영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 속에서 반론권의 제도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자유 없이는 책임이 있을 수 없지만 반면에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자유는 방종과 자만에 빠져 결국 그 자유를 잃게되는 바 양자는 밀접,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참된 언론문화의 창달과 성숙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론적 입장에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된 발전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나 독일에서 언론의 공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일찍이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언론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19세기 초에 당시 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서 언론이 지나치게 방종으로 흐르는데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언론이 공적 광장(public forum)으로서 공적 책임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IV. 사회적 책임론과 반론권

언론인이 정신적 작업으로서 저널리즘 행위의 실제에 임하여 취하여야 하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관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즉 이 경우 언론인의 의식상에서의 갈등과 선택의 문제를 Aristoteles의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언론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가 보다는 언론인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엘리트로서 언론인은 자신의 발전과 자아가치(self-worth)의 평가를 위해서 언론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Aristoteles의 관점과 유사한 입장을 지니는 Nietzsche도 언론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결정을 중요시 함으로써 언론인에게 부과되는 법제도적인 윤리의 경직성을 수정 완화하는데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하겠다. 한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격식주의적 의무론(formalistic deontology)의 입장에 있는 Kant의 도덕철학도 언론윤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Kant가 주창하는 원칙에 입각한 도덕적 의무는 언론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언론행위의 결과를 뛰어넘어 언론윤리의 견고함과 예측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언론인상을 그려보게 한다. 그렇다고 공리주의적인 도덕관이 오늘날 언론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언론인이 사회적 행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혹은 엘리트적인 편향을 접어두고 대신에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발전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Nietzsche와 Aristoteles의 도덕철학은 사회적 의식을 강조하는 Kant, Mill, Rawls 등의 도덕철학과 접목되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인은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던져버리고 이타주의나 다수주의라는 미명하에 사회 세력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함께 있는 바 언론인은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고 결정할 때 개인적인 기준과 이타적인 기준을 모두 균형있게 조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공급하는 생산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언론인은 여기에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 정상적인 생산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불완전하거나 천박한 욕구에 영합하려는 언론활동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도 도출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은 언론의 사회적 규정력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언론이 무소불위의 자유권한을 남용하여 '그릇된 사회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언론자유가 가장 성대히 만개되고 있는 미국에서 상업주의적 언론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개인주의적 자유권의 입장에서 언론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언론의 폐해는 비단 언론인의 잘못된 직업관행이나 의식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겠으나, 자본주의라는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는 언론산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본래 시장원리도 최소한 윤리적으로는 언론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기저에 깔고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이론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주장되거나 논의될 뿐 실제로 행사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즉 논리적으로 볼 때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매체는 도태되고 반대의 경우는 성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언론매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언론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월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을 전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언론도 시장에서 언론기업과 언론인의 특정한 이익을 쫓다보면 결국에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가 저변에 놓여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 완전한 자유시장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이상향으로 간주된 지 오래이며, 따라서 각종 제도적 규약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위 시장 내에서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이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다국적 기업의 전형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의 불균형과 편향성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각종 뉴미디어들이 속속 사회에 도입되어 방송의 다매체·다채널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신문과 잡지 등 전통적인 인쇄 매체들도 사회의 다양화·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자유경쟁,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한편으로는 그 수준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90년대 초 미국의 언론상황을 보면 신문의 99%가 각 지역 내에서 독점적이며, 발행부수의 88%가 몇 개 언론계열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잡지, 영화, TV, 라디오 및 출판이 소수의 계열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22)

이와 같은 언론상황으로 인하여 고전적인 '시장모델'이 사회환경이나 언론형질의 변화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완전한 사상의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언론 자유관에 입각하여 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매스미디어의 경제적 시장의 확대와 질적 전환이 사상의 시장의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언론(press)의 자유와 표현(speech)의 자유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러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하게 하느냐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기업가에게 달려있게 되었다. 따라서 독점적 매체로 하여금 공개된 신문과 방송이 되도록 강제하여야 할 공적 책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23) 물론 개념적으로는 매스미디어는 공적 영역이 아니지만 근대 사회이래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었으며, 비록 매스미디어가 그 자체에서 공적 토론광장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광장에서 공적 토론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항상 매스미디어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24)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반론권은 언론이 제도화된 사회권력으로 자꾸만 그 힘을 확대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법칙으로서 언론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언론수용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법익을 강화해줌으로써 나아가서는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언론에 관한 이러한 서구적 관념으로서의 공적 책임론이 미국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를 전제로 하고 다만 오늘날 상업주의적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책임의 개념으로 전지되어 사회적 책임이론화 하였다고 하겠다. 이면에서는 서구적 공적 책임론이나 미국의 사회적 책임론이 기본적인 출발점에서는 본래 차이가 있었으나 사실상 상당히 유사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미국의 Hutchins 위원회는 언론에 대하여 "설명과 비판의 교류장"이 되고 "사회를 구성하는 제(諸)집단의 대표상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25)

이는 앞서의 철학적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인주의적-엘리트주의적 대 집합주의적-보편주의적 도덕철학이 각기 평행선을 달리고는 있지만 최근에 그것을 하나로 수렴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이 잉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제도적 수란 중의 하나가 반론권 및 Barren 이 제기한 접근권이라고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이념적 지향점은 공적 광장으로서의 언론 개념을 전제로 하여 언론과 언론수용자 모두에게 언론의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목표는 '나와 남을 동일시하는 사회공동체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와 같이 반론권을 사회적 책임 이론에 의해서 근거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앞서의 자유주의 이론으로부터의 질적인 대변환을 가져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론이 정부의 강권화된 권력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가지는 적대감 및 이성과 사적 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을 거부하지 않으며 또한 기존의 법적 권리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바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 제도가 언론의 4 이론 중에 권위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이론 -처음부터 기본발상이 다른 소비에트공산주의 이론은 논외로 하고-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론과 가장 잘 결부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히 기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달라진 언론환경 속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의 언론자유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반론권은 오늘날 자연권이나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이미 고전적인 것이

되었다 하여도, 자유롭고 활기찬 토론장으로서의 언론의 관념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언론 사회적 책임론적 입장에서 나온 하나의 규범적 방안이라고 하겠다.

주

- 1) 본 연구는 1998 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2) Isaiah Berlin(1958) , Two Concepts of Liberty, London : Oxford Univ Press, p. 37.
- 3) John C. Merrill(1974), The Imperative of Freedom : A Philosophy of Journalistic Autonomy, N.Y . Hastings House, p. 32.
- 4) 자유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Herbert Muller(선택할 수 있는 능력 . the ability to choose). Jean-Paul Sartre(선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 choosing and acting) , John Dewey(개인의 발전 : personal growth), Erich Fromm(자발성: spontaneity) , F. A. Hayek (계획되지 않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 living in an unplanned society).
- 5) John C. Merrill(1977), Existential Journalism, N. Y. Hastings House, pp. 83 ~87.
- 6) Robert C. Tucker(1961) ,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London : Polity, p. 36.
- 7) 이규종, 한병구 공역(1991), 『매스컴 4 이론』 , 서울 : 문맥사, pp. 173~ 174.
- 8) Ernest van den Haag(1972), Political Violence and Civil Disobedience, N.Y., p. 108.
- 9) Richard Taylor(1961), "Freedom, Anarchy, and the Law", in Sidney Hook(ed.), Determinism and Freedom in the Age of Modern Science. N.Y., p. 171.
- 10) John C. Merrill(1989), The Dialectic in Journalism, Baton Rouge : Louisiana State Univ, Press, p. 39.
- 11) Tom Goldstein(1989), The News at Any cost: How Journalists Compromise Their Ethics to Shape the News, N.Y., p. 18.
- 12) Tom Goldstein, 앞의 책, PP. 95~97.
- 13) John C. Merrill, 앞의 책, p. 44.
- 14) 위의 책, p. 45.
- 15) John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vard Univ. Press, pp. 78~79
- 16) A. MacIntyre (1966), A Short History of Ethic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Y., pp. 178~190.
- 17) John C. Nerone, Last Rights, Revisting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l., Univ. of Illinois Press, p.155.
- 18) Martin Löffler, Karl E. Wenzel, Klaus Sedelmeir (1983), Presserecht, Kommentar 3. Auflage, München : C.H. Beck, PP. 237~ 238.
- 19) 김택환(1996), "멀티미디어 시대 언론정책 · 법제 패러다임 연구"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한국언론학회주최, 고 팽원순 교수 3 주기 기념 한 · 일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 53.

- 20) Martin Löffler 외, 앞의 책, pp. 246~262.
- 21) 김택환, 앞의 논문, p. 57.
- 22) John C. Nerone, 앞의 책, p. 101.
- 23) 위의 책, p. 103.
- 24) 위의 책, p. 155.
- 25) 이규종, 한병구 공역, 앞의 책, pp. 151~154.
- 26) John C. Nerone, 앞의 책, p. 9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 언론학 박사
- 한국언론학회 지방언론연구 회장
- 저술 : 언론 속의 정치와 사회 등 다수
- 현재 원광대 신방과 교수